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

발의연월일: 2024. 6. 4.

발 의 자: 강경숙·문정복·서왕진

차규근 • 박은정 • 정춘생

신장식 · 김재원 · 황운하

조 국・임미애・이성윤

어기구 · 한병도 · 김선민

김준형 • 이해민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

학생들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(ADHD), 품행장애(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의 나이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), 반항장애,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음.

이러한 학생은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리고 있는데, 해당 학생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 그러나,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도 부족한 상황이므로, 객관적 진단을

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.

이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 어지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 및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교육부장관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 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5조).
- 라.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를 둠(안 제6조).
- 마.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으로 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
바.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 사 등을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음 (안 제10조).

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심리·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학교"란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 - 2. "정서행동위기학생"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·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. 다만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라 정서·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이 법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

다.

- 제5조(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 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 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결과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 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종합계획의 수립
 - 2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

- 3.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관련 제도 개선
- 4.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·연구 및 정책의 분 석·평가
- 5.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·진단검사)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 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견·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,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.
 - ②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)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 기학생 진단검사 결과,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 및 학부모 등 보호자 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-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이 경제적 어려움, 심리적·정서적 어려움, 아동학대 등 위기요인으로 인하여 학습·심리·진로·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·심리·진로·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,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심리·정서적 상태, 문제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 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⑤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·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⑥ 학교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,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및 학습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⑦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- ⑧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포함해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1. 생활지도 및 위기학생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
- 2.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
- 3.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 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
- 4.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
- ⑨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선정 및 지원,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) ①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으로 한다.
 -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 교에서는 순회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.
 -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의 자격 및 운영, 배치,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조(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제도 연구,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, 상담·교육·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